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88

발의연월일: 2020. 8. 24.

발 의 자:최춘식·정희용·박대수

홍준표・김기현・조수진

권명호 · 이명수 · 김선교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등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지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부동산 매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매각시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에 이르 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토록 함으로써 외국 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소득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 <u><단서 신설></u>	<u>다만,</u> 외국인(「소득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에 한정한다)이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
	을 더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
	여 적용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